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39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9. 12.

다. 회 부 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Ⅲ. 검토의견

1.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도입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현행	개정안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생략) ② (생략)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 ----- ----- ----- <u>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u>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 및 이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

현행	개정안
	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현행법은 조합장·이사 등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자산 등 조합의 사업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2,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비상임으로 하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은 상임 이사를 두도록 하며,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되며, 이 중 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나,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하지만,

- 1) 「산림조합법」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1,000억원)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2,500억원)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 ※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선택(상임·비상임 여부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는 조합장부터 적용)
- 2) 「산림조합법」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 추천권과 총회 의장직을 맡는 등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상임 조합장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재직으로 조합의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조합원의 의사 반영 및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전국 산림조합 142개 중 약 133개 조합이 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9개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비상임 조합장 9명은 5선 3명, 4선 2명, 3선 3명 및 초선 1명임.

[상임·비상임 조합장 현황]

(2025. 8월말 기준)

구분	상임 조합장	비상임 조합장
조합장 수	133	9

주) 비상임 조합장(9): 화성·수원·오산, 시흥, 고양, 광주·성남·하남, 포천, 용인, 대전, 대구달성, 김제 산림조합

※ 자료: 산림청

[조합장 연임 현황]

(2025. 8월말 기준)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합계
조합장 수 (비상임)	55 (비상임 1)	49	31 (비상임 3)	4 (비상임 2)	3 (비상임 3)	142
비율	38.7%	34.5%	21.8%	2.8%	2.1%	100%

※ 자료: 산림청

다만, 개정안의 연임 제한은 비상임 조합장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전단의 “및 이사”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반면, 산림조합중앙회는 비상임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가 조합의 주요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있어,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임 조합장의 제도적 특성과 제한된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직위에 대한 연임 제한 도입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조합의 경우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모두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조합과 농협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수협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타 조합의 조합장(이사장) 연임 제한 사례]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임 조합장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비상임 조합장	제한 없음	1차 연임	제한 없음	2차 연임	2차 연임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제2200573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제2212940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